**FRAME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FRAME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본 동아리는 회원들간 사진 촬영 및 사진 편집을 함으로써 사진에 대해 공부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부득이한 경우 후임자 선출 후,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회장, 부회장의 선출은 전대 회장이 지원자를 뽑아 선출한다.

② 총무의 선출은 회장과 부회장이 지원자를 뽑아 선출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보고서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집행부 관리 및 회장을 수행한다.

③ 총무는 예산 관리 및 회계를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회장, 부회장이 아닌 임원진 17명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.

② 집행부는 홍보부, 엠티부, 축제부, 전시회부, 관리부로 구성된다. 또한 각 부별 부장이 존재한다.

③ 집행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* 동아리 내 소모임 별 출사장
* 동아리 내 행사 기획

④집행부의 의결은 임원진과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각 부장의 주도하에 이뤄지며, 월 1회 이상 진행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본 동아리는 사진 촬영 및 편집에 관심이 있고, 숭실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개강 후 일주일 안에 임원진에게 의사표현을 할 시 탈퇴가 이루어진다.

② 동아리 내에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임원진과 집행부의 회의를 통해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정기 회의: 매주 화요일 22시이지만,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모임을 가지지 않는다.

② 임시 회의: 본 동아리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추가 모임을 가지며 모임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괄할 수 있다.

③ 행사는 엠티와 축제, 전시회로 한다.

행사 회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.

* 집행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.
* 임원진과 최소 두 번 함께 회의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학기 초, 말 총회를 실시하고 임원진은 모두 참석하도록 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일반 회원 회비는 한 학기에 30,000원으로 한다. 연장 회원의 경우 25,000원으로 한다.

② 회비는 개강총회 이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.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하다.

* 1) 만약 개강총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공식활동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.

③ 임원진 및 집행부의 회비는 기존 임원 및 집행부는 5,000원, 신규 임원 및 집행부는 10,000원으로 한다.

* 회비운영은 총무가 총괄, 기록하고 회비 출납 사항을 대표에게 보고한다.
* 적립된 회비는 양도할 수 없으며 미수 된 회비는 차기 임원진에게 이월한다.
* 총무는 학기 별로 장부에 지출내역을 기록한다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3.03.02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